종로구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
장애인정책 제안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종로구
– 함께 살자! –

2020. 3. 12.

– 제안단체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들장애인야학 · 더해봄
바둘기직업적응센터 · 사)노란들판 · 종로장애인복지관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종로지회·종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나야장애인인권센터
사)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종로구 장애인차별철폐 8대 정책과제, 17개 세부정책요구안]

(1) 장애인 주거권 보장	1.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도 함께 사는 종로구 - 공공임대주택 확충 2. 종로구 관내 장애인지원주택 확보 3. 종로구 중증중복,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제공
(2) 장애인 노동권 보장	1.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종로구 확대 2. 권리중심-중증장애인기준 공공일자리 종로구 자체사업 마련
(3) 장애인 교육권 보장	1. 종로구 장애인평생학습 도시 실현 2. 장애인평생교육 예산 확보
(4) 장애인 지원체계 강화	1. 장애인 가족지원체계 강화
(5) 노인·노숙 장애인 지원	1.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2. 노숙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6) 장애인인권 교육 의무화	1. 장애인에 대한 혐오·차별 발언 금지에 대한 약속 2.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대면교육 약속
(7) 종로구 무장애도시 선포	1. 장애인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2. 종로구 유니버셜디자인 조례 제정 3. 보완대체의사소통 ZONE 마련
(8) 종로구 탈시설 선언	1. 종로구 장애인탈시설 선언 발표 2. 종로구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및 시설폐쇄 추진

【2020년 종로구 장애인 인구 및 주요현황】

<table>
<tr><th>구분</th><th>내 용</th></tr>
<tr><td>인구</td><td>
• 종로구 인구 : 151,290명(1.55%), 세대 수: 73,947세대 / 서울시 인구: 9,729,107명
<table>
<tr><th>계</th><th>지체</th><th>시각</th><th>청각</th><th>언어</th><th>지적</th><th>뇌병변</th><th>자폐성</th><th>정신</th><th>신장</th><th>기타</th></tr>
<tr><td>6,068</td><td>2,661</td><td>717</td><td>905</td><td>42</td><td>396</td><td>574</td><td>111</td><td>271</td><td>251</td><td>140</td></tr>
</table>
• 종로구 장애인 등록인 수: 6,068명
<table>
<tr><th rowspan="2">계</th><th>정신요양시설</th><th colspan="3">장애인거주시설</th></tr>
<tr><th>서울정신요양원</th><th>소계</th><th>은혜장애인요양원</th><th>문혜장애인요양원</th></tr>
<tr><td>551</td><td>245</td><td>306</td><td>146</td><td>160</td></tr>
</table>
• 시설 입소자 수 : 551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 4,119명 / 3,410세대 (단위: 명)
<table>
<tr><th>계</th><th>종로
1·2·3·4
가동</th><th>종로
5·6
가동</th><th>창신
제1동</th><th>창신
제2동</th><th>창신
제3동</th><th>숭인
제1동</th><th>숭인
제2동</th><th>이화동</th><th>혜화동</th><th>기타</th></tr>
<tr><td>4,119
(3,410)</td><td>687
(676)</td><td>267
(222)</td><td>410
(361)</td><td>396
(307)</td><td>204
(135)</td><td>256
(186)</td><td>391
(363)</td><td>214
(172)</td><td>259
(198)</td><td>1,035
(790)</td></tr>
</table>
</td></tr>
<tr><td>주요
시설</td><td>
• 사회복지법인 : 19개소 • 종합사회복지관 : 1개소(종로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시설 : 3개소 (종로지역자활센터, 돈의동쪽방상담소, 창신동쪽방상담소)

• 장애인 관련 시설 : 15개소 (단위: 개소)
<table>
<tr><th>계</th><th>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th><th>장애인
직업
재활시설</th><th>장애인
거주시설</th><th>장애인
자립
생활주택</th><th>정신
요양시설</th><th>장애인
평생교육
기관</th><th>장애인
평생교육
시설</th></tr>
<tr><td>16</td><td>4</td><td>3</td><td>5</td><td>1</td><td>1</td><td>1</td><td>1</td></tr>
</table>
• 노인복지시설 : 108개소 (단위: 개소)
<table>
<tr><th rowspan="2">계</th><th colspan="8">노인시설</th><th rowspan="2">노인일자리
훈련·알선
기관</th></tr>
<tr><th>소계</th><th>복지관</th><th>경로당</th><th>노인
교실</th><th>양로</th><th>요양</th><th>주야간
보호</th><th>노인의
집</th></tr>
<tr><td>102</td><td>95</td><td>3</td><td>63</td><td>9</td><td>1</td><td>10</td><td>5</td><td>4</td><td>7</td></tr>
</table>
• 경로당 : 63개소 (구립 42, 사립 21)
</td></tr>
<tr><td>재정
사항</td><td>
• 재정자립도 : 47.4%(25개 자치구 중 4위 / 자치구 평균 28.1%)(2019년 기준)

- 강남구(54.4%), 중구(54.9%), 서초구(53.3%) 순

• 예산규모 : 468,317백만원/ 일반회계 417,900백만원, 특별회계 50,417백만원(2020년 예산 기준)

• 세입(단위: 백만원)

- 지방세수입 125,918(30.13%) / 세외수입 70,340(16.83%) / 지방교부세 8,954(2.14%) / 조정교부금 등 54,655(13.08%) / 보조금 130,027(31.11%) / 보전수입 등 28,003(6.70%)

• 세출(단위: 백만원)

- 일반공공행정 34,897(8.35%) / 보건 8,725(2.09%) / 공공질서및안전 3,651(0.87%) / 농림해양수산 605(0.14%) / 교육 8,136(1.95%) / 산업·중소기업 1,307(0.31%) / 문화및관광 20,769(4.97%) / 교통및물류 17,212(4.12%) / 환경 29,315(7.02%) / 국토및지역개발 15,533(3.72%) / 사회복지 157,359(37.65%) / 예비비및기타 120,384(28.81%)
</td></tr>
<tr><td>기타</td><td>
• 저소득가구 위기극복 긴급지원 사업(2019년 기준) (단위: 건, 천원)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계</th><th>생계비</th><th>의료비</th><th>주거비</th><th>연료비</th></tr>
<tr><td rowspan="3">2019</td><td>신청건수</td><td>537</td><td>256</td><td>123</td><td>109</td><td>49</td></tr>
<tr><td>지급건수</td><td>1,198</td><td>675</td><td>123</td><td>290</td><td>110</td></tr>
<tr><td>지 급 액</td><td>644,996</td><td>333,939</td><td>218,849</td><td>81,428</td><td>10,780</td></tr>
</table>
</td></tr>
</table>

(출처 : 종로구 2020년 구정현황 / 2020년 주요업무계획)

(1) 장애인 주거권 보장

1.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도 함께 사는 종로구 - 공공임대주택 확충
2. 종로구 관내 장애인지원주택 확보
3. 종로구 중증중복,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세부정책과제 1.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도 함께 사는 종로구 - 공공임대주택 확충

▲ 제안배경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은 SH공사와 LH공사에서 제공하는 영구·국민·재개발 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Shift)·희망하우징·행복주택 등 주거환경에 따른 다양한 임대주택이 있음. 공공임대주택을 물량위주로 공급해 일부 자치구에 편중되는 현상이 있기에 재고율이 평균 이하인 자치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더 보급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종로구 전체 가구수 60,786호 중 공공임대주택은 1,237호이고, 전체 가구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2.04%로 **서울시 평균 6.57%의 1/3 수준**임(2016년 기준).

○ 종로구는 창신동 삼일아파트 부지(서울시와 기획재정부의 국가소유 토지)에 쪽방 거주민 300세대 수용하는 '저소득층 공공 임대주택' 사업을 서울시에 제안함. 주거 목적 외 지속가능한 생활과 사회로의 자활을 촉진하도록 공동작업장, 기술교육원, 사회적 경제 활동 공간, 상담소 등의 시설을 주택단지 내 두는 '원룸형 안심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 중임(종로타임즈, 20190515).

○ 정부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책으로 수도권 등 주거비 부담이 높은 지역에 있는 공공청사를 개발해 청년 임대주택과 신혼희망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임. 이에 서울 종로5가 선거연수원을 청년 임대주택(50호 추정)을 공급할 예정임(이데일리, 20190717).

▲ 요구내용

○ **종로구 관내 공공임대주택 서울시 평균 수준 확보**

○ **청년매입임대주택 중 장애청년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보**

세부정책과제 2. 종로구 관내 장애인지원주택 확보

▲ 제안배경

○ 지원주택이란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서비스와 주거공간을 동시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말함.

○ 국토교통부는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2019.10.24. 보도자료)'를 통해 매입임대를 활용한 복지서비스 연계형 지원주택 공급이 활성화 되도록 기초자치단체가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 30% 이내에서 자율적 입주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함. 이에 서울시와 SH는 '2019년부터 장애인, 노숙인 대상으로 216호 규모의 주거유지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종로구 전체 가구수 60,786호 중 매입임대주택은 112호이고, 전체 가구수 대비 매입임대주택은 0.18%로 **서울시 평균 0.63%의 1/4 수준**임(2016년 기준).

○ 서울시는 2016년 지원주택 시범사업을 통해 2019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2022년까지 매년 70호씩 확대할 계획임. 2019년 지원주택 확보물량은 강동구(12호), 구로구(16호), 노원구(12호), 동대문구(9호), 양천구(19호)로 총 5개 자치구 68호임.

○ 종로구 기존주택 매입임대 물량 112호(2016년 기준)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용산구-중구 다음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최근 중구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한 국내 1호 역세권 청년매입임대주택 물량은 하고 있음.

▲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18.5.3 제정)

▲ 요구내용

○ **종로구 관내 장애인지원주택 100호 확보**

- 탈시설/재가 중증장애인 100명~150명 장애인지원주택 지원

세부정책과제 3. 종로구 중증중복,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제공

▲ 제안배경

○ 2016년 종로구 임대주택 재고현황을 살펴보면 매입임대주택은 112호로 용산구-중구 다음으로 낮고, 전세임대 575호 중 주거취약계층은 25호로 전체 전세임대 중 4.34%만이 주거취약계층 물량으로 확보되어 있음.

○ 종로구는 높은 부동산 가격과 상업지구 중심이라는 특성으로 주택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서울시가 적극적인 추진 중인 '매입임대주택형' 지원주택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음. 이에 주택은 장애인가족 또는 부모가 매입하고 주거서비스를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자가형 지원주택' 모델을 종로구 특화사업을 제안함.

○ 주거서비스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지원주택 입주자 개인별 욕구에 따라 상시 또는 간헐적으로 제공하는 주거관리 및 생활관리 전반에 대한 서비스로 주거상담, 일상생활 관리, 의료지원, 심리정서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18.5.3 제정)

▲ 요구내용

○ **주택확보 (발달장애인 부모 중심 참여) 10채, 종로구 주거서비스 예산 보장**

- 중증중복, 발달장애인 10명~15명 지원

(2)장애인 노동권 보장

1.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종로구 확대

2. 권리중심-중증장애인기준 공공일자리 종로구 자체사업 마련

세부정책과제 1.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종로구 확대

▲ 제안배경

○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일자리 마련을 위해 국비(30%):시비(35%):구비(35%) 매칭으로 재정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 종로구는 2020년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62명을 지원하고 있음. 이는 2018년 45명, 2019명 51명에 비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용산구 다음으로 24번째이며, 장애인인구가 작은 중구 67명 보다도 5명이 적은 수치임. 이에 종로구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일자리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함.

구 별	'20년 일자리사업 참여자 배정					'19년 일자리사업 참여자 배정					'19년 대비 증감 내역
	계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일자리	발달 장애인	계	일반 일자리	시간제일 자리	복지 일자리	발달 장애인	
합 계	**2,418**	**896**	**300**	**1,155**	**67**	**2,130**	**778**	**258**	**1,044**	**50**	**288**
종로구	62	22	14	26		51	20	13	18		11
중구	67	24	8	35		60	23	6	31		7
용산구	60	26	2	32		50	26	2	22		10
성동구	80	31	15	34		71	30	14	27		9
광진구	92	37	16	39		76	34	13	29		16
	86	38	9	39		72	33	5	34		14
중랑구	134	50	24	60		111	38	19	54		23
성북구	101	42	6	53		100	40	7	53		1
강북구	77	28	9	40		72	27	10	35		5
도봉구	65	24	4	37		61	24	4	33		4
노원구	99	39	6	54		93	39	4	50		6
은평구	138	50	15	65	8	118	40	14	59	5	20
서대문구	115	35	24	45	11	105	35	20	40	10	10
마포구	151	50	16	73	12	140	37	12	79	12	11
양천구	144	55	19	70		128	43	15	70		16
강서구	136	50	16	70		114	37	12	65		22
구로구	89	37	8	44		80	32	8	40		9
금천구	94	40	16	38		67	22	17	28		27
영등포구	77	30	8	39		73	29	8	36		4
동작구	92	24	8	37	23	86	24	8	34	20	6
관악구	99	37	9	47	6	93	35	11	44	3	6
서초구	104	28	22	54		86	18	14	54		18
강남구	76	29	6	34	7	54	26	2	26		22
송파구	97	35	8	54		93	33	8	52		4
강동구	83	35	12	36		76	33	12	31		7

(출처 : 2020년 서울시 내부자료)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 일자리사업 실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

▲ 요구내용

○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 종로구 적극 확대로 200명 확보**

세부정책과제 2. 권리중심-중증장애인기준 공공일자리 종로구 자체사업 마련

▲ 제안배경

○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37.3%로 전체인구 경제활동참가율 64%보다 26.7% 낮으며, 성별로는 장애남성의 고용률(45.6%)이 장애여성의 고용률(20.3%)에 비해 25.3% 높음(2019, 장애통계연보). 또한 장애인구 2,526,201명 중 경증장애인의 취업자가 728,615명인데 반해 중증장애인은 153,275명으로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인 임금근로자 627,706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376,497명으로 60.0%해당함(2019,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고용)은 전국적으로 651개(2018년 12월 기준)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이용 장애인 18,205명 중 17,490(96%)명이 중증장애인으로,「최저임금법」제7조의1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2019, 장애인백서).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3.16%/3.4%) 및 민간기업(2.67%/2.9%)에서 달성되지 못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체 장애인 고용률도 미달(2.78%/3.4%)되었음(2019, 장애통계연보).

*「최저임금법」제7조 ①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 현재 고용노동부는 2020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10,000명 / 동료지원가 500명 포함)' 및 '중증장애인 인턴제(400명)', '지원고용(5,000명)'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에 노력하고 있지만 그 수가 현저히 부족함. 더욱이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과도한 실적 위주의 사업으로 지적되었지만, 정책이 제고되지 못한 채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사업에 참여한 중증장애인이 사망한 사례가 발생함.

○ 그로인해 장애인단체 등은 1)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전면 개편, 2)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공공일자리로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등의 직무 인정, 3)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제도 전면 개편, 4)「최저임금법」제7조 적용제외 폐지, 5)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일자리 예산 확대(공공일자리 1만 개), 6)「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종로구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제6조(지원)의2(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상담·취업정보지원사업 및 제6조의3(중증장애인 권익 및 역량강화 사업)항에 따라, 종로구 자체 예산으로 권리중심-중증장애인기준 공공일자리(직무 : 권익옹호활동, 인권·인식교육활동, 문화예술활동) 50명을 마련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통한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할 필요성이 있음.

○ 한편 종로구는 2009년부터 '효사랑 안마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효사랑 안마사업' 일자리 인원은 총 42명(시각장애인 안마사 28명, 보조인(경력단절여성) 14명)으로 안마사 자격을 갖춘 미취업 시각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소요예산은 590,000천원임(구비 100% / 2020, 효사랑 안마사업 추진계획).

▲ 요구내용

○ **권리중심-중증장애인기준 종로구 공공일자리 50명 제공**

(3)장애인 교육권 보장

1. 종로구 장애인평생학습 도시 실현
2. 장애인평생교육 예산 확보

세부정책과제 1. 종로구 장애인평생학습 도시 실현

▲ 제안배경

○「평생교육법」제5조의2(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 제5조의3(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평생학습도시 167개(서울시 15개 자치구 시행 중 / 2018, 평생교육통계)가 운영되고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이동권, 접근성 등이 고려되지 않아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임(2020, 국립특수교육원).

* 평생교육기관 수: 전체 3,768개, 장애인 232(6.2%)개 / 학습자 수: 전체 17,618,495명, 장애인 3,619(0.02%)명, 발달장애인 1,724(0.01%)명 (출처: 2018, 교육부)

○ 2020년부터 시행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교육부 3억, 지자체 3억 대응투자)'는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및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에 기반한 장애인 역량 개발 지원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될 예정임. 이에 각 지자체의 의지와 협력이 중요하며, 종로구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통한 종로구 장애인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3조(평생교육 시설의 설치) ① 평생학습도시 조성,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 한편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장애인평생교육법」제정을 요구하고 있음.

▲ 요구내용

○ **종로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교육부 지원 신청**

○ **「종로구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조례 제정」 약속**

세부정책과제 2. 장애인평생교육 예산 확보

▲ 제안배경

○ 장애인 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무학 10.4%, 초등학교 27.3%, 중학교 16.7%, 고등학교 30.4%, 대학이상 15.1%로, 전체 장애인등록자 2,668,411명 중 중졸 이하의 장애인이 54.4%로 나타남. 이는 우리나라 25-64세 성인인구 중 고졸이상 학력자가 88%로 OECD 평균(83%)보다 높은 상황에서(2018, 통계청),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학령기에 적절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채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에도 어려움을 보여줌. 이에 장애성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증대가 필요함.

○ 한편 향후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 영역은 '문화·체육·예술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및 문자해독교육' 등이었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프로그램 홍보

강화(29.4%)', '학습 보조금 지원(23.7%)', '교육기관까지의 이동방법 지원(20.0%)',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육과정 운영(17.7%)' 등으로 나타남(2017, 장애인 실태조사).

○ 현재 종로구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운영 중이지만, 그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종로구는 **「평생교육법」 제33조의5(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경비 지원)**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4조(경비지원)에 따라, 종로구 장애인평생교육기관·시설에 대한 시설 설비비, 시설 운영비, 강사 및 보조인력 운영경비 지원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요구내용

○ **종로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 강화**

(4) 장애인 지원체계 강화

1. 장애인 가족지원체계 강화

세부정책과제 1. 장애인 가족지원체계 강화

▲ 제안배경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약 72개소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10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운영 중임.

○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부모 교육 및 동료상담을 주축으로 장애자녀 보호자 양육지원, 장애인 가족을 위한 상담·치료·정보제공 사업, 위기 장애인 가족 발굴·사정·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복지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장애인 가족 복지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공적 책무를 다하고 있음.

○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중앙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만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장애인 가족이 가지고 있는 돌봄·양육 부담, 사회적 관계 단절,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사업,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장애아동가족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지원 사업 등 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지원 사업이 예산 편성되어 지원하고 있지만, 운영 단체가 지역마다 상이하며 체계적으로 지원되기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앙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사업을 통합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이관하는 것이 필요함.

▲ 요구내용

○ **체계적인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 중앙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 **장애인 가족에 대한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역장애인자족지원센터 국고 지원**

(5) 노인·노숙 장애인 지원

1.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2. 노숙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세부정책과제 1. 노인 장애인 대한 지원체계 마련

▲ 제안배경

○ 노인 장애인 인구의 증가

1. 보건복지부 2017년 통계 : 등록장애인 2,545,637명 중 65세 이상 1,149,910명(45.2%)
2. 서울시 2019년 현황 : 등록장애인 392,920명 중 70세 이상 141,815명(36.1%)
3. 종로구 2018년 현황 : 등록장애인 6,017명 중 70세 이상 2,413명으로 전체장애인의 40.1%

○ 보건복지부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전체 장애인 중 65세 이상이 47%로 고령화 되었고, 장애인 가구 중 1/4 이상이 1인 가구임. 전체 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18.6%, 자살 생각률은 14.3%로 전체 인구에 비해 여전히 높았으며, 만65세 이상 장애노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19.0%, 자살 생각률은 15.2%로 더욱 높게 나타남.

○ 또 만65세 이상 장애노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37.6%로 전체 장애인 34.0%로 비해 높으며, 주돌봄 제공자가 가족이 아닌 돌봄서비스 제공자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장애인 13.9%에 비하여 장애노인의 경우 18.5%로 더 크게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서비스 만65세 연령제한'이라는 악법을 유지하고 있음.

○ 종로구는 70세 이상 노인 장애인은 전체장애인의 40.1%로 서울시 36.1%에 비하여 높음, 노인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필요함.

▲ 요구내용

○ **노인장애인의 거주형태, 돌봄 유형, 욕구에 관한 실태 조사**

○ **실태조사의 기반으로 중장기 계획 마련**

세부정책과제 2. 노숙 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 제안배경

○ 서울시 2018년 노숙인 실태

1. 서울시 노숙인 시설 현황 : 37개소
2. 노숙인 수 : 3,478명 (79% 시설, 21% 거리생활)
3. 쪽방 거주인 수 : 3,197명
4. 종로구 : 거리노숙인 49명, 쪽방 거주인 899명(돈의동 570명, 창신동 329명)

○ 2016년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홈리스의 29.5%가 등록장애인이며, 이 중 76.2%가 장애가 중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며 정신장애 39.9%, 지체장애인 29.2%로 가장 많음. 노숙장애인은 노숙인과 장애인이라는 교차성 특징을 가진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는 취약계층이며, 불분명한 주거 특성을 장애등록 등의 공적 지원체계 접근에 어려움이 있음.

○ 종로구는 탑골공원에 머무는 노숙인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대책반을 꾸리고 시설 입소나 귀가를 유도하는 한편 자립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자 수급자 신청이나 취업 알선을 돕고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거나 정신 질환을 앓는 경우 서울시 정신건강팀에 의뢰해 전문의 진단을 받도록 할 계획임(서울경제, 20170821).

○ 서울시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로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9년부터 지원주택 216호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매년 200호씩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노숙인 대상 지원주택은 2019년 100호, 이후 2022년까지 매년 60호를 공급할 계획임.

▲ 요구내용

○ **종로구 노숙 장애인에 관한 실태 조사**

○ **지원주택 내 장애인편의시설 마련(무장애설비 or 유니버설 디자인 설계)**

(6) 장애인 인권교육의무화

1. 장애인에 대한 혐오·차별 발언 금지에 대한 약속
2.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대면교육 약속

세부정책과제 1. 장애인에 대한 혐오·차별 발언 금지에 대한 약속

▲ 제안배경

○ 정치인들이 정당을 막론하고 장애인 혐오, 차별 발언을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0년 1월 15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를 통해 "나도 몰랐는데 선천적인 장애인은 후천적 장애인보다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데요"라는 장애인 혐오 발언을 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019년 8월 7일 당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를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돼 버렸다."라며 청각장애인 비하 발언을 함.

○ 이러한 발언은 곧바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고, 장애인 당사자들은 정치인들의 장애인 혐오, 차별발언에 반발하여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옴. 2020년 1월 23일부터 설 연휴 기간에 서울역에서 정치인들의 장애인 혐오, 차별발언 퇴치 서명을 받기도 함. 그러나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발언이 장애인들을 배제하고 비하한다는 경각심 없이 지속적으로 혐오, 차별발언을 이어옴.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25조(사회적 인식개선), 25조의 2(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4조(차별행위) 1항 4호(광고에 의한 차별), 26조(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UN 장애인권리협약 8조(인식제고)

▲ 요구내용

○ **종로구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 후보자 '장애인 차별, 혐오발언 근절을 위한 협약' 체결**

세부정책과제 2.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대면교육 약속

▲ 제안배경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2018년 5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법제화됨.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차별을 해소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

○ 또한 장애계는 장애인이 수행하는 가치있고 사회적인 활동을 일자리로서 창출하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를 만들라고 요구해왔음.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85일간 이어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농성을 통해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 도입 TF 등을 고용노동부와 합의하기도 함.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는 중증장애인이 잘 할 수 있는 직무 중 하나이며,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강사로서 일하고 있음.

○ 그러나 일선 기업이나 단체, 공공기관 등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수강하지 않거나, 대면교육이 아닌 인터넷 교육 등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대체하고 있어 실효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 강사들이 안정적으로 강사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음.

▲ 관계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UN 장애인권리협약 27조(노동과 고용)

▲ 요구내용

○ **종로구의회, 종로구청, 종로구 관내 공공기관 등의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연1회 대면교육으로 진행**

○ **종로구 내 기관·기업·단체의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대면교육 적극적인 홍보, 이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

○ **고용노동부가 대면교육 의무화를 위해 추진 중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후보자가 적극 협조**

(7) 종로구 무장애도시 선포

1. 장애인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2. 종로구 유니버셜디자인 조례 제정
3. 보완대체의사소통 ZONE 마련

세부정책과제 1. 장애인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 제안배경

○ 정부는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안 5차 계획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를 발표함. 5대 과제 중 하나가 장애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차별인식을 개선하고, 편의증진·이동권 등 접근권 확대임. 종로구도 자치구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 변화를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시민의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함.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2015년과 2018년 종로구 2개 지역(세종마을, 대학로) 상점의 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 및 점자메뉴판 등)을 확충하여 지역사회 내 장애인이 상점을 편의하게 이용할 수 환경을 일부 마련함.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지속적이지 못하고 단절되어 효과성을 확보 한계가 있음. 종로구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함.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2026년까지 궁궐과 종묘, 그리고 조선왕릉을 성별이나 장애, 연령, 언어 등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범용디자인(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한 무장애공간으로 만들 계획임. 종로지역은 궁궐, 한옥 등 다양한 문화재와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한옥 등은 장애인의 접근성이 매우 낮은 실정임. 종로지역 내 문화재, 문화공간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공간으로 거듭나야함.

▲ 요구내용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단계별 사업 추진**
○ **무장애 특화지역(대학로, 인사동) 임기 내 베리어프리 완성**
○ **문화재청 궁궐 베리어프리, 종로구 중점 추진 한옥 건축 내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무장애마을 조성 위원회 구성**

세부정책과제 2. 종로구 유니버셜디자인 조례 제정

▲ 제안배경

○ 나이, 성별, 장애유무 등 개인적인 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삶을 살아가야 함. 장애인은 지역사회의 환경적인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 보편적인 삶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변화가 중요함.

○ 서울특별시 유니버셜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서울시 자치구 중 도봉구, 마포구, 은평구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무장애마을 조성을 위한 의지를 갖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종로구도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으로 변화를 위해 건축, 교통, 보행환경 등의 기준을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함.

▲ **요구내용**

○ **종로구 유니버셜디자인 조례 제정**

세부정책과제 3. 보완대체의사소통 ZONE 마련

▲ 제안배경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담당 직원이 발달장애인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발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서울시 자치구중 마포구, 은평구, 영등포구, 금천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AAC마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종로구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종로구 내 의사소통권리 보장 관련 사업예산을 확보함.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종로구 등록장애인 6,064명 중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477명)에 대한 의사소통권리 보장이 필요함.

▲ **요구내용**

○ **종로구 관내 (17개 동) 보완대체 의사소통 ZONE 마련**
○ **주민센터 및 관공서 등 공공기관 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림이나 글자로 된 의사소통판 설치**
○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AAC앱 개발 및 QR코드를 활용 의사소통판 다운로드 등 확대 운영**
○ **카페, 음식점 등 의사소통판 QR코드 의무화**

(8) 종로구 탈시설 선언

1. 종로구 장애인탈시설 선언 발표
2. 종로구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시설폐쇄 및 탈시설 추진

세부정책과제 1. 종로구 장애인 탈시설 선언 발표

▲ 제안배경

○ 2015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인권단체는 인강원, 송전원, 마리스타의집 등 끊이지 않는 시설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좋은 시설은 없다! 서울시 탈시설 권리 선언”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당사자들이 직접 만든 ‘탈시설 선언문’을 발표, 서울시 제2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계획에 ‘장애인 권리 선언문 발표’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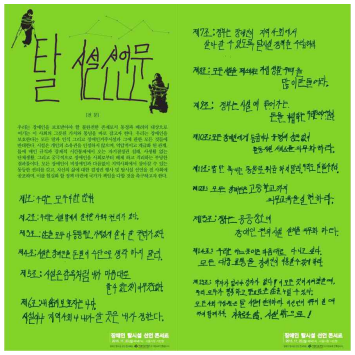
○ 이에 2019년 ‘서울시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사업’ 10주년 기념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장애인 탈시설 권리 선언문」을 낭독함. 선언문 전문에는 “장애인 시설 거주와 격리 정책은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으로 대상화하고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해 왔다. 따라서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초하여 서울시는 장애인의 시설 거주를 제한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인권보장을 위하여 탈시설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명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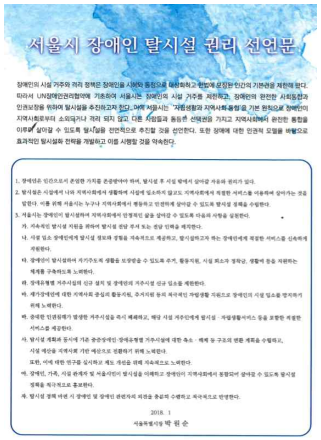
○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에게 장애인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범정부·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을 구성하고, 탈시설 정책방향과 목표, 추진일정 및 예산 등을 포함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2019.09.20).

○ UN장애인권리협약 19조와 일반논평5에 근거하여 정부 당국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의 완전한 보장과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통합되어 참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명시됨.

▲ 요구내용

○ **종로구 장애인탈시설 선언 채택과 발표**





세부정책과제 2. 종로구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시설폐쇄 및 탈시설 추진

▲ 제안배경

○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현황은 2020년 기준 전체 45개소(장애인거주시설 43개소, 영유아시설2개소)이며, 30인 이상 시설 36개(80%), 100인 이상 시설 5개(11%)임. 이 중 종로구 관할 장애인거주시설은 문혜장애인요양원(수용인원 146명)과 은혜장애인요양원(수용인원 160명)이 있으며 이는 서울시 100인 이상 5개 시설의 2개소에 해당됨.

○ 이 2개소의 위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은 2006년 당시 장애인시설, 정신병원, 복지관 등 13개 산하 시설을 운영하며 3개 생활시설만으로 100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법인임. 하지만 이 보조금은 시설운영에 쓰여 지지 않고, 당시 이사장은 27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음. 또한 시설 거주 장애인 대상으로 한 강제노역, 인권유린, 썩은 식자재 제공, 생활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방치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으며, 종로구청에 따르면 1992~2004년까지 재단 산하 은혜· 문혜요양원에서 사망한 사람은 총249명(은혜 169명, 문혜 80명)에 이르는 심각한 범죄행위가 있었던 시설임(비마이너, 20190726).

○ 이에 장애계는 당시 사태에 대하여 농성투쟁을 하며 성람재단 비리 및 인권유린 실태조사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하였음. 이러한 상황을 계속 발생시키는 중요한 핵심은 재산의 사유화가 가능한 사회복지법인체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에 있음. 성람재단 또한 심각했던 문제가 있었지만 당시 이사장의 일가가 지금까지 법인 이사직을 맡고 있는 등 문제의 연결고리는 아직도 끊이지 않고 진행 중에 있음.

○ 서울시는 2013년부터 제1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계획(2013~2017)을 시작으로 현재는 제2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계획(2018~2022)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 중 5년 내 800명 탈시설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에 맞춰 종로구 에서도 서울시 거주시설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은혜·문혜장애인요양원 시설 축소 및 시설폐쇄까지의 계획을 요구함.

▲ 요구내용

○ **종로구청 관할 은혜·문혜장애인요양원 4년 내 30인 이하로 시설규모 축소 이행**

○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을 지역사회 탈시설 지원 예산으로 전환**

○ **은혜·문혜장애인요양원 10년 내 완전 시설폐쇄 계획 수립 및 약속**



<별첨자료 1 - 종로구청 내부자료>

2020 효사랑 안마사업 운영지침

1 참여자 모집 및 선발

가. 참여자 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

단, 아래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기타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나. 참여자 모집

○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안마사, 보조인) 공개모집 원칙(**종로구민 최우선 채용**)

- 모집공고 [서식1]
- 참여신청서[서식2], 상담의견서[서식5]

※ 단, 사업 중간에 결원이 발생하여 참여자를 신속하게 모집해야 하는 경우 사업수행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모집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만18세미만 및 만18세이상 초중고등학생의 소득은 20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적용
- 대학생(야간대생 포함, 휴학시 최대1년까지 근로소득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은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적용
- 장애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다. 참여자 선발

○ 사업수행기관은 아래 우선 선발 기준을 준수하고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자 선발기준표 【서식6】을 활용하여 선발

[우선 선발 기준]

① 1순위 : 신규 중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종로구민
② 2순위 : 중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여성장애인, 만50세이상 장애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 장애인
③ 3순위 : 기타

○ 중도포기자 발생시 신속한 충원을 위한 예비순위자 명부 작성 및 활용

라. 중복 참여 제한

○ 효사랑 안마사업의 참여일과 참여시간 중복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지원 전일제 재정지원일 자리사업 참여 불가능

※ 단,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시간제·간헐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민간일자리에 참여 가능(단,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 한함)

(참고) 근로유형

- 전일제 :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 시간제 : 주기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참여하되 주 30시간 미만의 경우
- 간헐제 : 참여 기간의 정함이 없이 필요에 따라 정한 경우 또는 주로 주말에만 참여하는 경우

마. 참여계약 체결

○ 사업수행기관은 최종 선발된 참여자와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조건 합의서를【서식7】작성하는 등 참여계약 체결

바. 대기자 관리

○ 참여인원 외에 대기자를 선발, 순위별로 관리하여 중도포기자 발생 시 순위별로 대기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 참여자 교육

○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본교육(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을 필수로 실시

3 근무형태 및 복무규정

가. 근무형태

1) 근무 시간

○ 1일 근무 시간 : 9시~13시 또는 13시~17시 (휴게 시간 포함, 최대 3시간 안마서비스 제공)

○ 1주 근무 시간 : 20시간 (월~금요일, 주 5일 근무)

※ 1일 4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가능

2) 근무 방법

○ 안마사 2인, 보조인 1인을 1개조로 편성하여 1일 종로구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 운영

- 매주 월~금요일(5일), 1일 최대 4시간
- 1인당 최대 4명까지 안마서비스 제공
- 1회 서비스 시간은 40분 내외

※ 이동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편성인원, 방문횟수 등 탄력적 운영 가능

3) 휴일(법정휴일 및 약정휴일)

○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나 근로의 의무는 면제되는 유급휴일

- 법정휴일 :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5월1일)
- 약정휴일 : 공휴일, 대체공휴일,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휴일

※ 단, 1주 동안 (휴일과 겹치지 않는) 소정 근로일을 만근 한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인정

나. 복무규정

1) 휴가

○ 1개월 만근 시 익월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

9개월 모두 만근 시 9일의 유급휴가 발생

2) 병가

○ 사업수행기관장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할 경우 병가로 인정할 수 있으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4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

< 병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전염병의 일환으로 인하여 참여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병가 신청 시 제출서류 >

- 의사의 진단서 등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

< 병가 인정 일수 >

- 연간 5일사용 가능

3) 여성 참여자에 대한 보호 휴가 등

○ 여성 참여자에게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태아검진 시간 등을 아래 법령에 따라 제공해야 함.(근로기준법 제73조,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모자보건법 제10조1항)

※ 여성 참여자에 대한 보호 휴가 등 관련 법 참고

※ 생리휴가는 소급 및 적치·분할사용이 불가하며 무급휴가임.

○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휴가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30일간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

※ 단, 출산전후 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참여자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고용센터☎1588-1919)

참고	출산전후 휴가와 유산·사산휴가 사용관계
· 출산전후 휴가 분할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도 출산전후 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산·사산휴가 사용 가능 · 출산전후 휴가 분할 사용 중 유산·사산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를 종료하고 유산·사산휴가 제공	

4) 공가 (아래의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

○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건강검진을 위하여 공단으로부터 대상자 통보 시 수검 받을 때

○ 장애인일자리사업 교육, 시상식 등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 행사에 참석할 때

○ 올림픽·전국체전·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단, 공무(公務)수행이 직접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행사 및 대회(예- 관련 민간단체나 협회 등이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 체육대회 등) 참여는 공가로 인정 불가

5) 특별휴가(경조사, 배우자 출산 휴가)

○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특별휴가 제공

구 분		휴가일수
결 혼	본 인	5일
	자 녀	1일
사 망	배우자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입 양	본 인	20일
출 산	배우자 출산	5일

단,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불산입하며, 특별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

※ 상기 특별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함

6) 조퇴, 지각 및 결근

○ 조퇴 및 지각의 경우 누계 4시간을 1일 휴가로 처리하며, 해당 월을 경과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누적 처리

※ 단, 휴가 잔여분이 없을 경우 결근 처리

7) 참여 제한

○ 사업수행기관은 아래와 같은 참여자 본인의 귀책사유를 초래하였을 경우 참여중단 가능

- 업무지시 불이행, 민원 야기, 기타 업무 태만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

○ 참여자가 아래의 사유에 해당 될 경우 해당 월말에 참여 계약 종료

- 최종 장애등급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민간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 연속 5일이상 또는 월간 10일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
- 개인적인 사유으로 연속30일(유급, 무급휴무 포함) 이상 참여가 어려운 경우
- 참여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보수 및 각종 보험 등

가. 보수 지급

1) 보수 금액

○ 안마사 : 1인당 1시간 13,370원

○ 보조인 : 1인당 1시간 8,590원 (※ 2020년 최저임금 적용)
○ 기본 급여액에서 각종 보험가입에 의한 개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
○ 주 5일을 연속해서 근무시 주차지급, 1개월 만근시 월차 지급(1일 임금지급)

2) 보수 일할 계산

○ 유급휴가(일),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을 제외한 결근 시 급여액은 근로 시간에 지원액 단가를 곱하여 지급

단, 유급휴일은 해당 월에 발생된 휴일이 해당되며,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약정휴일(공휴일,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휴일)의 경우 주 근로시간 만근 시 발생

3) 보수 지급 방법

○ 보수는 참여자 본의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며, 참여자에게 급여명세서【서식13】제공

※ 단, 참여자가 참여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인 등에 지급 가능하며, 사업수행기관은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검토 후 지급가능

○ 보수 지급 후 관련 사항을 월별 보수대장【서식12】에 기재하고, 개인별 무통장 입금증을 첨부하여 관리

(참고) 민법 제1000조 관련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4) 보수 지급 시기

○ 매 익월 5일 이내

나. 참여자 보험 관리

○ 가입보험 종류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사업수행기관은 가입보험에서 제시하고 있는 취득 및 상실 신고 기한을 파악하여 직접 신고
○ 참여자에 따라 각종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며, 각 참여자별 고지된 보험료에 따라 기본 급여액에서 개인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수 지급

※ 문의 : 국민연금(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장기요양(건강보험공단), 고용·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

다. 운영비(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 지원

1) 사용용도

○ 운영비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 참여자의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자부담금
-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 기관 차량을 이용할 경우 운영비 범위 내에서 유류비 집행가능, 단, 차량 보험료, 수리비 등은 집행 불가(차량운행 시 차량운행일지 비치)

- 매트·수건·작업복 등 안마시술에 필요한 재료비 등 소모품 구입
-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발대식, 간담회, 평가회, 명절선물비 등 소요경비
- 참여자의 장애 특성(시각장애)상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운영비 내에서 개별 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원 가능

※ 운영비 불가 항목 : 사무용품, 수행기관 공공요금 등 기관 운영비성 경비

5 참여자 관리 및 지원

가. 참여자 관리

1) 근무 상황 관리

○ 사업수행기관 담당자는 참여자의 휴가 등 근태 관리를 위해 참여자에게 근무상황부【서식9】과 업무일지【서식10】을 작성토록 하고 작성내용을 확인하고 관리
○ 사업수행기관 담당자는 참여자명부【서식11】및 보수대장【서식12】를 작성하여 참여자 및 보수지급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

2) 중도종료자 관리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당초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중도종료 사유 등을 파악하여 기록 및 관리
○ 중도 종료자가 발생한 경우 바로 대기자로 충원하거나 참여자를 모집·선발하여 사업 공백을 최소화

나. 참여자 지원

1) 근무환경 조성

○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적절한 근무 환경 조성 등에 노력하여야 함.

2) 사업 참여자의 자긍심과 신뢰성 제고 방안 시행

○ 종로구청장 명의의 신분증 발급 및 사용 협조
○ 사업에 따라 사업수행에 적합한 복장 등 지원(유니폼 등)

3) 참여적응 지원

○ 사업수행기관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원활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인근지역 장애인복지관 등 직업재활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적응지원서비스 의뢰 및 연계
- 적응지원서비스 :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애로사항 및 필요 지원사항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

<별첨자료 2 - 서울시 내부자료>

2020년 장애인일자리사업비 지원내역(자치구별)

○ 보조비율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자치구명	배정인원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2019년도 배정인원	증감인원
		계(A+B+C)	소계(A+B)	국비(A)	시비(B)	구비(C)		
합 계	2,418	34,725,751,000	22,571,739,000	10,417,725,000	12,154,014,000	12,154,012,000	2,130	288
종로구	62	896,088,000	582,460,000	268,831,000	313,629,000	313,628,000	51	11
중구	67	924,715,000	601,068,000	277,421,000	323,647,000	323,647,000	60	7
용산구	60	881,106,000	572,722,000	264,338,000	308,384,000	308,384,000	50	10
성동구	80	1,186,515,000	771,234,000	355,953,000	415,281,000	415,281,000	71	9
광진구	92	1,382,366,000	898,538,000	414,709,000	483,829,000	483,828,000	76	16
동대문구	86	1,318,559,000	857,063,000	395,567,000	461,496,000	461,496,000	72	14
중랑구	134	1,942,336,000	1,262,519,000	582,701,000	679,818,000	679,817,000	111	23
성북구	101	1,466,565,000	953,267,000	439,969,000	513,298,000	513,298,000	100	1
강북구	77	1,069,594,000	695,236,000	320,878,000	374,358,000	374,358,000	72	5
도봉구	65	885,750,000	575,737,000	265,724,000	310,013,000	310,013,000	61	4
노원구	99	1,396,091,000	907,459,000	418,826,000	488,633,000	488,632,000	93	6
은평구	138	1,988,754,000	1,292,690,000	596,625,000	696,065,000	696,064,000	118	20
서대문구	115	1,649,864,000	1,072,411,000	494,958,000	577,453,000	577,453,000	105	10
마포구	151	2,115,240,000	1,374,906,000	634,572,000	740,334,000	740,334,000	140	11
양천구	144	2,066,243,000	1,343,057,000	619,871,000	723,186,000	723,186,000	128	16
강서구	136	1,900,478,000	1,235,310,000	570,143,000	665,167,000	665,168,000	114	22

자치구명	배정인원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2019년도 배정인원	증감인원
		계(A+B+C)	소계(A+B)	국비(A)	시비(B)	구비(C)		
합 계	2,418	34,725,751,000	22,571,739,000	10,417,725,000	12,154,014,000	12,154,012,000	2,130	288
종로구	62	896,088,000	582,460,000	268,831,000	313,629,000	313,628,000	51	11
구로구	89	1,310,404,000	851,762,000	393,120,000	458,642,000	458,642,000	80	9
금천구	94	1,452,839,000	944,345,000	435,853,000	508,492,000	508,494,000	67	27
영등포구	77	1,101,813,000	716,179,000	330,544,000	385,635,000	385,634,000	73	4
동작구	92	1,313,797,000	853,967,000	394,138,000	459,829,000	459,830,000	86	6
관악구	99	1,439,575,000	935,723,000	431,871,000	503,852,000	503,852,000	93	6
서초구	104	1,319,731,000	857,825,000	395,919,000	461,906,000	461,906,000	86	18
강남구	76	1,135,441,000	738,036,000	340,631,000	397,405,000	397,405,000	54	22
송파구	97	1,319,612,000	857,747,000	395,882,000	461,865,000	461,865,000	93	4
강동구	83	1,262,275,000	820,478,000	378,681,000	441,797,000	441,797,000	76	7